

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2015. 12. 07. ~ 12. 22.)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명	페이지
2015 ~ 115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
2015 ~ 122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	7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5~115
----------	----------

제출일자 : 2015. 11. 20.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거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업무로 2013년~2016년 기간 만료로 인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시니어클럽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길 138

다. 규 모 : 사무실 90㎡, 교육장 75㎡(작업장 별도)

라. 사업내용 : 거창시니어클럽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일자리 창출 및 보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 한 사항

바. 위탁방법 : 공모 또는 재 위탁

사. 선정방법 :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아. 소요예산

○ 거창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현 거창시니어클럽은 2013년 최초 협약이후 관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일자리 개발·보급·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하였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나.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2015. 12월 초 : 위탁공모 또는 거창시니어클럽 재협약 신청서 접수
- 2015. 12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
- 2016. 3월 중 : 거창시니어클럽 위·수탁 협약 체결

라. 예산조치

- 2016년 거창시니어클럽 운영비 본예산 반영

마.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계획 : 따로 붙임

거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거창시니어클럽은?

노인사회활동전담기관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관

I. 법적근거 및 위탁사무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13.12.5 시행)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시니어클럽 정책방향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 : 지정 및 취소, 예산 및 행정지원, 지도·점검 등
- 시니어클럽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여건조성

● 기존 위탁 현황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위탁사무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일자리 창출 및 보급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 한 사항
- 위탁기간 : 2013. 3. 21 ~ 2016. 3. 20(3년)

II. 거창시니어클럽 개요

1. 기본현황

● 기관현황

기관명	소재지	시설장	직원수	시설 규모	수탁법인
거창 시니어클럽	거창읍 중앙로 1길 138	문태생 (선용)	- 정원: 5명 - 현원: 5명 (전담인력 5명 별도)	- 사무실 : 90m ² - 교육장 : 75m ² (작업장 별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

(2015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배정 일자리(명)	예산액 (천원)	비고
총계	18개		499	967,740	
공익형	불법광고물 제거 및 재활용 활동	불법 전단지 및 광고물 수거 사업	6	11,520	
	근린시설 지원활동	스포츠공원 등 관리 및 환경정화	10	19,200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보조 및 청소사업	66	128,040	
	지역공원관리사업	죽전공원 관리 및 청소 사업	8	15,360	
	지역환경개선사업	거창군 관내 청소 및 환경정화	85	163,200	
복지형	지역아동센터연계사업	아동 식사 및 예절 교육 사업	24	47,040	
교육형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경로당회계 보조하는 사업	55	107,800	
	1-3세대 강사파견사업(짚공예)	전통 짚공예 만들기 교육사업	5	9,800	
	보육교사도우미사업	유치원 급식보조 및 청소 사업	8	15,680	
시장형	웃음공동작업단	단순작업을 통해 작업하는 사업	40	72,000	
	실버카페(cafe 웃음)	커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8	16,000	
	천연비누제조판매사업(거창버블플라워)	천연비누 제조하여 판매 사업	8	16,000	
	소담도시락배달사업	도시락 제조 판매 배달사업	6	12,000	
	전통부각제조사업(소담부각)	전통부각 제조하여 판매사업	10	20,000	
인력파견형	고운손일손도우미	일자리 파견 및 연결하는 사업	10	1,500	
전국형	홀로사는어르신안부확인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요쿠르트 배달	110	213,400	
	독거노인케어사업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사업	35	89,600	
지역형 (기타)	전통시장활성화 도우미 활동	전통시장 홍보 및 청소사업	5	9,600	

III. 재·위수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16. 3 ~2019. 3(3년)
- 수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

IV.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선정위원회
 - 심의위원 : 최소6명~최대9명 구성
 - 위원구성 : 관련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의내용 : 現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배점표에 따라 심의

V. 향후 추진계획

- 2015. 11월 중 : 거창시니어클럽 재협약(위탁기간 갱신) 여부 통보
- 2015. 12월 중 : 거창시니어클럽 재협약 신청서 접수
- 2015. 12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
- 2015. 12월 중 : 군의회 상정(동의)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2016. 3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VI. 부서의견

- 2013년 최초 협약이후 거창시니어클럽(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관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문성 향상 및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하였고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타 시니어클럽의 모범이 되도록 운영을 함
- 거창시니어클럽은 시작한 지 불과 3년으로 어느정도 안전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앞으로 3년간 연장 운영하도록 위탁(수탁)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5~
----------	-------

제출일자 : 2015.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계안정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위탁기간 : 3년(이후 평가 심의를 통해 3년 이내 위탁기간 갱신)
 - ※ 연중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사업 추진
- 수탁기관(업체) 자격기준
 - 채용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 및 법인단체
 - ※ 연간 10개월 이상 5~10명 정도의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속적으로 채용 관리가 가능한 곳
- 수탁기관(업체) 선정
 - 공개모집(홈페이지를 통한 공고)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 사업내용 및 조건
 - 선정 업체와 협약체결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1인 월 50만원 이내)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연 5~10명 정도) : 신규 채용 시 공개 채용 원칙
 - 채용기간 만료 후 업체의 자체평가를 거쳐 계속 채용 장려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 협의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예 산 액 : 금 3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민간 위탁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2015. 12월 중 : 군 의회 위탁 동의
- 2016. 1월 중 : 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회개최)
- 2016. 2월 중 : 협약체결(협약내용 공증)

라.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생계안정과 조기 정착 지원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위·수탁 운영 현황

- 현 수탁자(업체) 현황

위탁기간	기관·단체	대표	위치	비고
'15.3.1~12.31(10개월) (최초위탁:2011.3)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신인재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고용)현황 (단위 : 명)

취업(고용)분야	취업(고용)실적-실인원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과선별작업 등	14	16	12	16	10	

- 위·수탁 내용(위·수탁 협약서 제3조)
 - 여성결혼이민자 5~10명의 근로임금 50%(1인 월 50만원 이내) 채용지원금을 위탁금으로 보조
- 운영방법 : 매년 위·수탁 협약에 의거 10개월(3~12월)간 사업 추진
 - 사과 선별 작업 등 일거리가 없는 1, 2월을 제외하고 운영
- 예산액 : 30,000천원(균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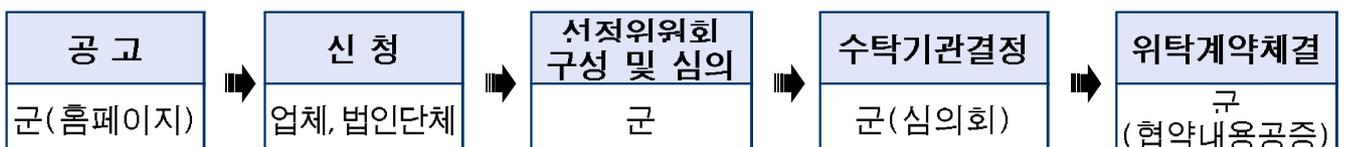
□ 추진계획

- 위탁목적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인 여성결혼이민자 고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6. 3. ~ 2018. 12.(3년)
 - ※ 연중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사업 추진

- 사업대상 및 인원
 - 수탁자(1개소) : 근로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 및 법인단체
 - 고용인원(5~10명)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연간 5~10명 정도
- 주요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 고용가능 업체 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업체 선정
 - 선정 업체와 협약체결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1인 월 50만원 이내)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
 -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 공개 채용
 - 채용기간 만료 후 업체의 자체평가를 거쳐 계속 채용 장려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 협의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예산액 : 금 30,000천원

□ 수탁기관(업체) 선정

- 수탁기관(업체) : 1개소
- 수탁 자격 기준
 - 채용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 및 법인단체
 ※ 연간 10개월 이상 여성결혼이민자 5~1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채용 관리가 가능한 업체 및 법인단체
- 위탁계약기간 : 3년(이후 평가 심의를 통해 3년 이내 위탁기간 갱신)
 - 연중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사업 추진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을 따름
- 수탁기관 선정
 -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 2) 선정절차



- 선정위원회 구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7조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기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위탁계약 체결 내용 :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기간 갱신, 위탁의 취소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향후 추진계획

- 2015. 12월 : 군 의회 동의
- 2016. 1월 중 :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회 개최)
- 2016. 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협약서 공증)
- 2016. 3월 : 2016년 위탁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과 생활기반 조성
-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 기여